

# 社會保險으로서의 醫療保險

醫療保險 管理公團 提供

社會保障制度는 社會福祉를 指向하는 地球위의 最上의 制度이며, 所得 再分配를 通하여 國民的 衡平을 이룩함으로써 國民生活의 最低限의 生存權을 保障, 國民모두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人間의 가장 큰 欲求이며, 生存의 最低條件은 貧困과 疾病으로부터의 解放입니다. 따라서 疾病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의 保障策인 醫療保險 制度는 國民福祉具現의 첫段階이자 社會保障制의 基本課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77년 7월부터 醫療保險이 實施되어 이래 爪跡히 成長發展하여 現在 全 國民의 約 42%가 適用받고 있으며 醫療保護 對象者를 합치면 約 50%에 該當하는 2천여 만명이 醫療保障을 받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는 1980年代末 全國民皆保險化를 目標로 示範事業을 運營하는 等 對策 마련에 腹心하고 있으며 關係研究機關에서도 醫療保障擴大實施方案이 活發히 研究檢討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最近 紙上을 通하여 保險料를 둘러 싼 論爭이 報道되어 國民들의 關心을 集中시킨 바 있는데 報道內容을 살펴 볼 때 一部 識者層에서도 醫療保險의 性格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여 私保險과 同一한 觀點에서 認識되고 있지않나 하는 우려마져 느껴집니다. 醫療保險은 保險技術을 利用하여 社會政策을 實現하는 社會保險方式으로 運營되고 있는데 이는 疾病, 負傷, 分娩, 死亡等으로 因하여 一時에 大量은 費用을 負担하게 되었을 때 相互間에 保險方式에 依하여 社會構成員 모두가 연대하여 解決해 나가는 共同負擔, 共同責任, 共同管理의 共同體의 意識을 그 基本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醫療保險은 一般 私保險과는 전혀 다른 社會保險의 特性을 지니게 되며 그중 重要한 差異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私保險이 個人的 公平性의 原理에 根據함에 依하여 社會保險은 社會的 適切性의 原理를 갖게 되고 加入에 있어서도 私保險이 任意의 인데 반해 社會保險은 強制適用된다는 點입니다. 또 私保險은 契約關係에 依하여 保險料 納付에 따라 解約 또는 契約履行이 決定되지만 社會保險은 權利와 義務가 法으로 規定되고 法에 依해서만 給與構造가 變化될 수 있습니다. 特히 私保險은 被保險者의 權利를 保護도록 充分한 基金이 積立되어야 하나 社會保險은 經濟的 觀點에서 오히려 完全한 基金積立은 바 賦役하지 않는다는 것이一般的 見解입니다. 이러한 離격한 性格上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醫療保險을 私保險의 原則에 따라 論理를 主張함은 비단 우리만이 아닌 各界의 實務者나 專門家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特性과 함께 그 根本취지나 背景에 있어서 醫療保險은 한 사람의 疾病, 負傷으로 因한 負擔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危險을 分散시키는 役割을 担當하게 하며 所得이 大量은 사람은 그만큼 어려운 處地에 있는 사람을 위해 負擔을 더 많이 하고 健康을 누리는 사람은 自己가 健康한 만큼 주위에서 아파 苦生하는 이웃을 돋는 것입니다.

醫療保險制度의 成功의 인 遂行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 制度에 參與하고 있는 各界各層의 國民의 連帶意識의 確立과 이의 實現을 위한 積極的 協同姿勢가 切實히 要求됩니다. 受診者는 不要不急한 診療行為를 自制하고 “나의 保險”을 아끼고 키우는 保險財政 監視者로서의 役割을 堅持하여야하며 醫療界는 經濟的이며 効率의 診療로 그 代價를 保障받는 醫療經濟의 合理化 風土造成에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社會保障의 오랜 歷史를 가진 西歐先進諸國도 그 빛나는 制度가 결코 國家가 制度를 導入하였기 때문에 그 源源과 發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같은 制度를 收容할 國民이 먼저 成熟 存在하였다라는 事實을 우리는 主目해야 할 것입니다. 醫療保險이 남의 保險이 아니라 바로 나의 保險, 나의 責任이라는 主人意識과 共同連帶意識으로 「福祉社會建設」이라는 遠大한 目標아래 醫療保險에 從事하는 關係當事者들은 透徹한 國家觀과 開拓者라는 精神姿勢로 「萬人이 一人을 爲하고, 一人이 萬人을 爲하는」 훌륭한 社會保險으로서의 醫療保險制度를 定着發展시켜 나가는데 우리 다같이 獻身의 努力과 智慧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